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84
----------	-------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서영석 · 윤준병 · 윤후덕
이해식 · 한정애 · 안태준
박용갑 · 윤종균 · 노종면
홍기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검체검사를 전문적인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으나,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과 위탁 절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함.

또한 현행 요양급여비용 지급체계에서는 검체검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 검사 비용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후 수탁기관에 검사 비용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검체검사 비용의 지급 과정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분쟁이나 지급 지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요양기관이 인력·시설·장비 및 정도관리 등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할 수 있는 검체검사의 범위와 위탁 절차·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체검사를 위탁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검체검사 비용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검체검사 위·수탁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3 및 제47조제8항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검체검사의 위탁)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이하 “검체검사“라 한다)를 인력·시설·장비 및 정도관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이하 “검체검사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검체검사의 범위와 위탁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검체검사를 위탁한 요양기관이 그 검체검사 비용을 포함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심사에 따라 검체검사 위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제44조에 따라 위탁기관이 받은 본인일부부담금 일부를 포함한다)을 공제하여 검체검사 위탁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이 경우 검체검사 위탁기관에 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기관이 아닌 기관의 검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기관이 아닌 기관으로서 검체검사를 수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수탁한 검체검사와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본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실시한 검체검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2조의3(검체검사의 위탁) ①</u> <u>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u> <u>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기</u> <u>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체</u> <u>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u> <u>사(이하 "검체검사"라 한다)를</u> <u>인력·시설·장비 및 정도관리</u> <u>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u> <u>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이</u> <u>하 "검체검사 수탁기관"이라</u> <u>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u> <u>는 검체검사의 범위와 위탁의</u> <u>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u> <u>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 ⑦ (생략)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 ⑦ (현행과 같 음)
<u><신 설></u>	<u>⑧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u> <u>공단은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u> <u>검체검사를 위탁한 요양기관이</u> <u>그 검체검사 비용을 포함하여</u> <u>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u> <u>제2항에 따른 심사에 따라 검</u>

⑧ (생략)	<u>체검사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제44조에 따라 위탁기관이 받은 본인일부부담금 일부를 포함한다)을 공제하여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이 경우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u>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	---